

농림부의 후계농업인력 육성계획

들어가며

1981년, 부정축재자의 환수 재산 458억원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농어민후계자(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은 2002년까지 12만 294명을 배출하여 우리 농업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농어촌의 희망으로 떠오른 젊은 후계 영농 인들은 정부에서 선정되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를 결성하여, 때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입개방과 WTO의 파고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하나의 아

〈 후계농업인제도의 시행 과정 〉

- 1980년 11월 -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제정
- 1981년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
- 1990년 4월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 농어민후계자 육성조항 명시
- 1991년 7월 - 향후 10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의 농어민후계자 육성계획 확정·발표
- 1992년 - 후계자 선정나이 제한을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변경
- 1994년 -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와 어업인후계자로 변경
- 1998년 - 농업인후계자 육성목표를 당초 16만명에서 14만명으로 수정
- 2001년 - 후계농업인 선발을 취농창업후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으로 분리
- 2003년 11월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후계농업인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개정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자로 타 산업분야 종사자라도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선발

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후계농업인 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젊은 영농인들의 농촌이탈을 완화하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후계농업인 제도가 조금씩 변모하여 내년부터는 일부제도가 완전히 변경되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의 2004년도 지원계획안

농림부의 내년 2004년 농업인력육성계획은 한마디로 취농창업후계농업경영인(이하 창업농) 선발을 확대하고 기존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은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이 아닌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즉, 창업농 선발은 현행대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 및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는데, 2004년은 1,0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평균 지원단가를 2003년의 4,800만원보다 오른 6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규정은 삭제하거나 창업농규정으로 단일화하고, 신규후계농업경영인(40세미만)은 농업경영종합자금제(후술함)에 의거 지원하되 2003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종전처럼 시장·군수가 선정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신청자들은 납유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심의·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 제출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로 한정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신청서는 앞으로 없는 것으로 조정했다.

농업경영종합자금제는 행정기관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실행만을 담당하던 기존 농업정책금융방식에서, 금융기관이 사업타당성평가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자금제 하에서는 금융기관이 농업인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농정시책과의 합치여부에 대해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충분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2년내 상환 조건이고 금리는 모두 4%이며, 시설자금은 상한선이 없는 대신 지원하한선이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신규후계농업인 : 최고 5천만원,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최고 1억원까지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2004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획의 문제점 및 한농연 요구사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농민인구는

2005년 359만7천명, 2010년 231만명(전체인구의 4.5%)이고, 농가호수는 90만5000호, 40세 미만 농가는 전체의 2.5%인 2만3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46만명(35.7%), 2005년 153만3천명(42.6%), 2010년에는 151만6천명(46.9%)이 되는 반면에, 55세 이하의 농업경영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88만3천명(37.5%), 2005년 72만6천명(33.7%), 2010년 60만3천명(31.2%)으로 영농인력의 감소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농업의 포기 또는 농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금융기관에 맡길 경우 금융기관의 속성상 자율성을 내세워 채권회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인력육성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금융기관의 특성상 채권관리 위주로 소극적인 사업추진에 안주할 우려가 크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신규취농자, 영세농, 젊고 유능한 농업인이 배제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민이라면 후계농업경영인제도를 굳이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계농업경영인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40세도 한창 일할 나이의 활동연령층으로 분류되나, 창업농지원에 비해 지원이 적고 까다로울 경우 기존에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짐으로 사기저하가 예상된다.

그리고 농업인의 사업계획 수립능력이 필요한 만큼 금융기관의 주관에 따라 까다로울 소지가 있

다. 즉, 자금용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익을 내겠다는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는 능력이 요구되어 경영장부 제출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취농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과 마찬가지로 신규후계농업경영인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선발·관리해야 하며 만약 금융시장에 맡긴다면 이는 인력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기존에 농촌에서 살면서 농업기반이 있는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처음 시행 할 당시에도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여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분야는 제외했으므로, 현재에도 여전히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한 후계농업인 선정은 종합자금제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생산성을 가진 우리의 농토를 인력이 없어서 폐허로 돌린다면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공익을 포기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적 재산의 손실이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국민자존과 국가존립을 위협받게 될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영농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 유력한 방법은 현 시점에서 후계농업경영인선발제도이다. 따라서, 취농창업후계농업경영인 제도가 도시에서 미래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면, 농촌에서 미래의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후계농업경영인제도임을 명심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

한농연 총무국